

충청북도기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9년 3월 9일

나. 회부일자 : 1999년 3월 9일

3. 제안이유

가. 21C 충북의 새로운 이미지 형성을 위해 기존 도기와 문장·휘장등을 시대에 맞게 새롭게 제정하고,

나. 지방화·세계화시대에 맞추어 우리 도의 독특한 행정문화의 정립이 필요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4. 주요골자

가. 조례 제명의 개정(도기외에 문장, 휘장등을 규정)

나. 도기교체에 따른 조문의 문구 수정 및 「별표」 도안의 제정

다. 도기의 모양, 규격, 문장, 휘장등에 관하여 명시

5. 검토의견

충청북도기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도기와 문장·휘장등을 우리 도를 상징하는 「밝은 해, 푸른 산, 맑은 물」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청풍명월의 고장을 형상화하여

21C 충북의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새로 제정된 도기의 모양과 규격, 문장, 휘장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충청북도기조례”를 “충청북도기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제명을 조례내용과 부합되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단,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는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상징적인 도의 심벌마크등의 잦은 변경에 대해서는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 충청북도기조례중개정조례(안)